

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 신청 공고

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」 제17조, 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」 제9조 및 제10조, 「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」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6월 1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신청 대상

- 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」 제17조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받으려는 자

2. 신청 기간

- 6월 1일부터 연중 상시

3. 제출기관

- 한국교통연구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센터(인증대행기관)
 - * 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(반곡동 736)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(B동) 4층 한국교통연구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센터
 - * 문의 : 044-211-3194, 3320
 - * 이메일 : cpds@koti.re.kr(유사 시: kwon8917@koti.re.kr)
- 연중 상시 직접 방문 제출(협의완료 후 우편 제출 가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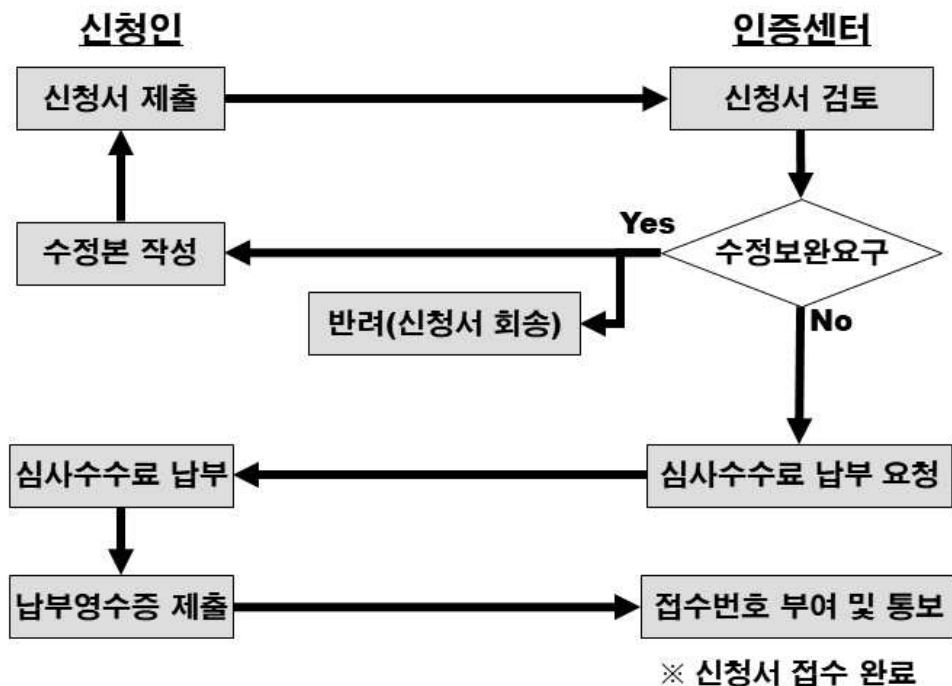
4. 제출방법

□ 자체평가

- 인증센터에 심사를 신청하기 이전에 신청기업이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예상 점수를 산출하여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 가능
- 자체평가점수가 인증요건을 충족(100점 만점에 70점 이상, 심사항목의 배정 점수의 20퍼센트 이상의 점수 획득)한 경우에 신청 권장
- 자체평가서 작성 방법 : 첨부된 자체평가서 참조

□ 신청서 접수 절차

- 신청서를 인증센터에서 검토 완료 후 심사수수료 납부 요청 및 완료하여 신청서 접수번호 부여



<신청서 접수 절차>

□ 신청서

-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/>)에서 신청서 및 관련 보고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고,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

□ 심사수수료 납부

- 심사수수료 : 신청 1건당 200만 원(신규인증 및 정기점검 신청시 동일)

* 근거 : 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」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
「생활물류서비스사업 등록 및 인증 등 수수료 고시」 별표1

※ 제출서류

-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신청서 1부(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7호서식])

- ② 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」 제10조의제1항에 의한 제출서류(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신청서 첨부서류)

- ②-1. 사업계획서, 재무제표 등 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」 제9조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

- ②-2. 사업자등록증 1부

※ 모든 제출서류는 기준일자를 제시하여야 함

- ③ 법인등기부등본(말소사항 포함) 1부

※ 법인등기부등본(말소사항 포함)의 경우에는 인증 신청서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최근 자료이어야 함

- ④ 자체평가서 및 자체평가서에 명시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

- ⑤ 모든 제출서류 사본은 원본과 같다는 확인서(대표이사 직인 날인) 1부

⑥ 조건표 1부

- 자체평가서의 세부/세세부심사항목별로 증명자료의 내용이 작성된 페이지 명시

⑦ 신청기업 소개자료 1부

⑨ 심사수수료 납부영수증(확인증) 1부

- * 위 관련서류를 이동식 저장매체(USB 등)에 저장하여 추가로 제출
- * 이 외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인증센터에서 차후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- *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명기회와 보완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, 소명 또는 보완 후에도 여전히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서류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

※ 제출서류 작성요령

- ① 자체평가서 및 증명자료는 A4 규격에 작성
- ② 모든 제출자료의 내용은 선정기준(인증평가 기준)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작성하여야 함
- ③ 서술내용은 최근의 실적을 중심으로 작성하되, 필요한 경우 그 이전의 과정과 실적을 제시할 수 있음
- ④ 신청서는 소속기업 대표자의 승인을 필히 득해야 함
- ⑤ 모든 제출자료는 바인더 혹은 책자형태의 1부와 함께 별도로 원본파일을 이동식 저장매체(USB 등)에 담아 필히 제출하여야 함

5.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

- 평가항목 및 배점은 「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」 제3조 및 [별표 1]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기준,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세부규정에 따름

- 선정절차는 「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」 제3조제4항 및 제5조제3호에 따름
- 선정결과 발표 : 연중 상시
 - *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, 알림마당→공지사항)에 게재 예정
 - * 접수량이 많으면 접수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접수순으로 순차적으로 심사를 시행하여 결과 발표

6. 유의사항

- 선정결과 발표 이후,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·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
-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
- 정확하고 객관적인 인증심사를 위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 및 입증을 위한 추가 자료요청 가능

7. 별첨

-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 신청서
-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세부규정
- ③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 자체평가서

※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(☎ 044-201-4157, 4158), 한국교통연구원(☎ 044-211-319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